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1. 12.(사천시장)
- 회 부 : 2007. 1. 12.(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10호)
- 상 정 : 2007. 1. 23.(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 구이서)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장사용료를 비 잔디구장과 잔디구장을 구분하여 인상조정하고, 실내수영장이용료를 경제성(유류대, 상수도요금 인상 등)을 감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안 제10조제2항 [별표 1] 1.전용기본료)

시설별	사용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평일	휴일	기본	평일	휴일
잔디구장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1회(3시간이내)	55,000원	100,000원
	체육이외	1회(일)	50,000원	60,000원	1회(3시간이내)	90,000원	150,000원
비잔디구장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1회(일)	35,000원	40,000원
	체육이외	1회(일)	40,000원	50,000원	1회(일)	45,000원	55,000원

2) 수영장 이용료 조정(안 제10조 제2항 [별표1] 5. 수영장이용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구 분	이용자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어 른	3,000원	2,500원	3,500원	3,000원	
	군경, 청소년	2,500원	2,000원	3,000원	2,500원	
	어린이, 노인	2,000원	1,500원	2,500원	2,000원	
회 원	어 른	50,000원		60,000원		
	군경, 청소년	40,000원		50,000원		
	어린이, 노인	30,000원		40,000원		

3) 중계 방송료 신설(안 제10조2항 [별표1] 6. 중계 방송료)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 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	중계방송료의 반액	

4)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신설

(안 제10조2항 [별표1] 7.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종 류	기 준	사용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1㎡당(월액)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 15일이상은 1월로 한다.
	1등급	8,000원	
	2등급	6,000원	
에드벌문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 5) 법제처 법령제명 뛰어 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 뛰어 쓰기
- 6) 정의규정 신설 및 삭제
 - “유아”라 함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10호)
 - 청소년 규정 삭제(안 제2조제13호)
 - 어른을 일반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5호)
- 7) 사용료 기간 구분(안 제10조제2항)
 - 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 8) 사용료 구분(안 제10조 제2항)
 - 수도 및 난방을 냉·난방으로 구분 한다.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군호)

- 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시설을 활용한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 시설별 사용료 조정 현황과 인근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면
 - 운동장 잔디구장은 현행 1일 평균 사용료가 43,750원에서 98,750원으로 125% 인상되고, 비잔디구장은 38,750원에서 43,750원으로 13%인상 조정되었으나
 - 고성군의 비잔디구장은 평균 43,750원으로 사천시와 같고, 잔디구장은 평균 180,000원으로 사천시보다 81,250원이 높으며,
 - 밀양시와 함안군도 사천시의 시설 사용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근 시군보다 사천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영장 이용료는 상수도요금 및 유류가격 반등으로 개인은 평균 500원을, 월회원은 10,000원을 인상 조정하여 경제성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 중계방송료 및 광고용 상행위 시설사용료 신설은 영조물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적정한 행정상 공과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수영장 이용료 조정에 따른 인상 여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